

02

IPA 부서별 청렴·윤리경영 리스크 사례 주제별 분류

부 서	리스크
인재개발팀	인사업무의 공정성 위반
기획조정실	부적정한 예산집행
	직무전념의무 위반
경영지원팀	공사 자산의 사적·목적 외 사용
재무관리팀	공금횡령 및 유용
	계약 및 입찰 관련 특혜
	계약 시 직무전념의무 위반
글로벌물류전략실	부당한 알선·청탁
항만운영팀	허위보고
물류사업팀	특정업체 특혜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항만개발실	위법·부당 업무지시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항만건설팀	부적정한 예산집행
	위법·부당 업무지시
항만시설팀	부적정한 예산집행
	허위보고
갑문운영팀	허위보고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갑문설비팀	부당한 알선·청탁
	허위보고

'18년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을
반영한
IPA
청렴·윤리경영
리스크

대처방안
가이드북

II

부서별 청렴·윤리경영 리스크 대처방안 가이드라인

01. 인재개발팀	12
02. 기획조정실	14
03. 경영지원팀	18
04. 재무관리팀	20
05. 글로벌물류전략실	26
06. 항만운영팀	28
07. 물류사업팀	30
09. 항만개발실	34
09. 항만건설팀	38
10. 항만시설팀	42
11. 갑문운영팀	46
12. 갑문설비팀	50

01

인재개발팀



사례1 인사업무의 공정성 위반

임OO 팀장은 인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험에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씨의 자녀가 응시했고, 국장 A씨는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임 팀장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임 팀장은 A씨 자녀의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었고 국장의 자녀는 인천항만공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었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을 심의 없이 시행하거나 제척대상 위원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
- 학연·지연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인사업무 담당자는 채용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원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승진·전보·상훈·징계 등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이나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임직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7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관련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02 기획조정실



사례1

부적정한 예산집행

김OO 과장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회의 진행 등 지출할 곳이 많은데 현재 집행 가능한 회의비가 얼마 남지 않음을 확인했다. 마침 이번 해에 정년 퇴임자가 은퇴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인건비 예산이 남게 되었다. 김 과장은 중요한 프로젝트이므로 전용 승인이 날 거라 확신하고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인건비 불용액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편성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
- 예산 과목별로 예산 과다 책정 등에 의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성 저해
- 항만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거나 이월액 산정을 잘못하여 이월·사고이월된 예산을 다시 이월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등은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다.
- 임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예산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예산 관련 문제는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그 민감도와 위험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이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8조 (공·사 구분)

- ② 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①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④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기업회계 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02

기획조정실



 사례2

직무전념의무 위반

정OO 대리는 신규 사업이 적합한지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할 신규 사업이 있는데 향후 우리 공사에 큰 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정 대리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의 검증을 면밀히 하지 않고 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사적 인터넷, 채팅, 주식 등)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직무전념의무’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하게 하여 공정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지장을 가져올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및 회사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부과한 직무에 관해 전념하여 근무해야 한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임직원의 기본 의무이며, 이러한 기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조직 분위기가 한 순간에 흐트러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본인의 생각에는 괜찮더라도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 맡은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에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②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03 경영지원팀



사례1 **공사 자산의 사적·목적 외 사용**

공OO 팀장은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들과 교외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공 팀장의 승용차를 수리하게 되었다. 공 팀장은 차 없이 가족들과 교외로 나가기에는 힘들어서 그냥 가족 약속을 취소할까 고민하던 중, 마침 금요일 오후에 외근이 잡혔다. 어차피 외근 나가면 부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토요일에는 아무도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공 팀장은 가족나들이 때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월요일에 반납했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단순 견학, 관광 목적의 국외여행 실시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회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사 자산의 사적·목적 외 사용으로, 이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 임직원은 공사에 속한 자산을 사적 또는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 자산은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공사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시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이익금 포함)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 차량 외에도 회사 비품, 전화기, 인쇄기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물품 역시 모두 공사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8조 (공·사 구분)

- ② 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①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① 임직원은 차량, 선박,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04 재무관리팀



사례1 공금횡령 및 유용

강OO 팀장은 집에서 사용할 A4용지를 사기 위해 퇴근 후 문구점에 들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비품 구매를 담당하는 같은 팀 홍XX 과장이 부서별 필요한 비품을 오늘 구입한다고 한다. 강 팀장은 고민 하다가 A4용지는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물품이니 이상해 보일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A4용지와 각티슈를 회사 비품으로 신청했고, 수령 후 집에 몰래 가져갔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금 횡령
- 허위청구·정산·구매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공금횡령'은 회사공금 및 자산을 개인이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연구용역비 및 사업비를 부풀려 보고하여 착복하는 행위
 - ② 회사자산(법인카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③ 출장비, 경조사비, 물품비 등을 허위로 회사에 청구하여 착복하는 행위
 - ④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사비, 도서구입비, 골프fee 등을 회사에 청구하여 착복하는 행위
- 임직원이 공사의 공금 및 자산에 대한 접근·사용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 공금횡령 및 유용은 공사의 예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공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공사의 공금 및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공금횡령을 목격할 시 묵인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8조 (공·사 구분)

- ② 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①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④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기업회계 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04

재무관리팀



사례2

계약 및 입찰 관련 특혜

이OO 대리는 최근 타 부서의 양XX대리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양 대리는 용역 계약을 앞두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 3년간 우리 공사 용역을 수행한 A업체와 계약을 하면 좋을 텐데 경쟁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A업체가 선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이 대리는 보장된 업무 성과를 위해 면허요건, 실적제한 등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 지속
-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참가자들이 로비를 통해 제안서 심사의 공정성 위반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임직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 단순 편의를 위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부패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유사 거래라 하더라도 여러 업체의 참가와 정당한 계약 절차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 향후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입찰 심사 시 심사위원 구성을 골고루 하여 참가자들의 청탁으로 인해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인천항만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04

재물관리팀



사례3 계약 시 직무전념의무 위반

유OO 대리는 물품 구매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몇 년째 같은 업체에 발주하고 있는데 항상 좋은 품질의 물품을 수령하였다. 요즘 많은 업무로 인해 정신이 없던 유 대리는 얼마 전 수령한 계약물 검수를 미루고 있다가 지금까지 잘못 온 적이 없었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고 건성으로 검수하여 넘겼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수의계약 시 시장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계약 가격 설정
- 참가업체의 견적 등을 감안하여 규정한 입찰공고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입찰 남용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부과한 직무에 관해 전념하여 근무해야 한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임직원의 기본 의무이며,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조직 분위기가 한 순간에 흐트러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본인의 생각에는 괜찮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 등 협력회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7조의6 (공정한 검사업무의 수행 등)

- ① 임직원은 공사가 발주한 계약물의 수령 시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으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공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공사가 발주한 계약업무의 검사보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05 글로벌물류전략실



부당한 알선·청탁

신OO 대리는 신규 부두의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며칠 후 타 부서의 서XX 팀장이 신 대리를 찾아와 밥을 사주겠다고 고급 일식집에 데려갔다. 식사를 하던 중 서 팀장은 신 대리에게 자기 대학 동기 A가 이번에 인천항 신규 부두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신 대리는 서 팀장이 간절히 부탁하기도 하고, 특별히 다른 지원 업체에 비해 선정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서 A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행정처분·형벌부과, 인사, 수상·포상, 계약자 선정·탈락, 재화 및 용역 거래, 평가 관련 등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를 담당 직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 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이다.
- 부당한 알선 또는 청탁을 받을 시, 공사의 계약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 공사의 윤리적 가치를 단호하게 전달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계약해야 한다.
- 부정청탁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부정청탁이 인정될 시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자 외에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평상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인천항만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06

항만운영팀



사례1

허위보고

서OO 과장은 항만시설 사용 업체의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얼마 전 서 과장은 지난 분기 때 실시한 항만시설 임대업체 실태조사 대상에서 몇몇 업체가 누락되었고, 그 중 재전대 위반 업체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안 그래도 요즘 팀 분위기가 좋지 않는데 이 사실을 보고하면 관리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고 상사에게 엄청 혼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다. 서 과장은 이번에만 넘어가고 다음 실태조사 때 위반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허위보고'는 사고은폐, 책임회피, 업무 간소화, 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허위보고는 임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정직한 업무수행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사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하고 성실하게 수행된 업무 하나하나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발전 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07

물류사업팀



사례1 특정업체 특혜

배후단지 운영 업무를 맡은 윤OO 과장은 얼마 전 팀장으로부터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팀장의 친구인 B업체 대표가 이번에 인천항 배후단지에 새로 입주했는데 임대료를 싸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윤 과장은 B업체가 임대료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지만 팀장의 지시로 B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해주었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공과 사를 구분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은 계속적인 오류를 범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 배후단지/부지 입주 및 임대에 관련한 특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은 물론, 국유재산법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인천항만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07

물류사업팀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 재무현황 정보, 입찰관련 정보 등 공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하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공사의 입장에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설사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었다라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친분관계를 통한 정보공개 요청이 올 경우 사내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인천항만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공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2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배후부지를 운영 관리하는 오OO 차장은 몇 년 후 인천항에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선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듣고 나니 이전부터 인천항 부지에 입주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온 처남이 생각났다. 오 차장의 처남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인천항 배후단지는 최적의 입지 장소다. 어차피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이니 처남에게 따로 말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 오 차장은 공사의 구체적 계획과 예상 임대료 등의 정보를 처남에게 전달했다.

08

항만개발실

그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사례1 위법·부당 업무지시

한OO 과장은 항만개발 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다가 황XX 팀장으로 부터 호출을 받았다. 황 팀장은 이번 용역을 C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과장은 C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황 팀장은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대로만 하라고 지시했다. 한 과장은 상사의 지시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황 팀장의 지시대로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직무윤리 위반이다.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지켜 선정해야 한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에 따를 경우 그 부하직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
 - ①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②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인천항만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임직원 상호 관계)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8

항만개발실



사례2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항만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장OO 대리는 요즘 사촌 형으로부터 자주 전화를 받고 있다. D물산의 대표인 사촌 형은 장 대리에게 신규 배후단지 조성 계획, 항만 개발사업의 방향 등 인천항만공사의 사업 계획에 대해 물어본다. 항상 사촌 형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장 대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차피 엄청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사촌 형이 유출시킬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제공 하곤 한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 재무현황 정보, 입찰관련 정보 등 공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하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공사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설사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었다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친분관계를 통한 정보공개 요청이 올 경우 사내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인천항만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공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09

항만건설팀



사례1

부적정한 예산집행

신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업무를 담당한 박OO 과장은 작년보다 줄어든 사업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 올해도 아직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다 쓰지 못하면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여 결국 박 과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불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공사 설계 내역을 편법적으로 조정하여 총 사업비를 부풀려 계상하였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물량증감, PS단가적용 협의, 물가인상, 신규비목단가 적용 등 설계 변경을 부적정하게 하여 예산 낭비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등은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다.
- 임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예산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예산 관련 문제는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그 민감도와 위험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직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8조 (공·사 구분)

- ② 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①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④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기업회계 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09

항만건설팀



사례2 **위법·부당 업무지시**

심OO 대리는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어느 날 같은 팀의 안XX 팀장이 심 대리에게 이번 용역을 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E업체에 맡기라고 지시했다. 심 대리는 이걸 명백히 위반 행위가 아닌가 싶어 거절을 했지만 안 팀장은 자주 하는 용역이니 한번쯤은 괜찮다고 했다. 심 대리는 계속 되는 팀장의 지시에 점차 난감해지고 있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직무윤리 위반이다.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지켜 선정해야 한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에 따를 경우 그 부하직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
 - ①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②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인천항만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임직원 상호 관계)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항만시설팀



사례1

부적정한 예산집행

터미널 신축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배OO 차장은 요즘 부서 운영비가 부족해 고민이다. 사업비는 많이 남는데 그 돈을 부서 운영비로 대체하고 싶던 배 차장은 얼마 후 진행할 터미널 신축 공사에 대해 설계 변경을 부적절하게 하여 사업비를 과대 계상하였고, 그 중 일부를 회식비, 다과비 등 부서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유사 금지행위 유형

• 물량증감, PS단가적용 협의, 물가인상, 신규비목단가 적용 등 설계 변경을 부적절하게 하여 예산 낭비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등은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다.
- 임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예산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예산 관련 문제는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그 민감도와 위험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이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8조 (공·사 구분)

- ② 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①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④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기업회계 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항만시설팀



 사례2

허위보고

최OO 주임은 항만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 다양한 업무로 바쁜 시기에 안전점검 기간과도 겹쳤다. 최 주임은 이전 점검 때 아무 이상 없었던 시설물들이었으니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국 몇몇 안전진단 대상을 누락하는 등 진단을 소홀히 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여 모든 항만시설물이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허위보고’는 사고은폐, 책임회피, 업무 간소화, 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허위보고는 임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정직한 업무수행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사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하고 성실하게 수행된 업무 하나하나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갑문운영팀



사례1 허위보고

갑문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OO 과장은 시설물을 점검한 용역업체로부터 특정 시설물을 좀 더 정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다. 허 과장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복잡한 정밀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전부 정상으로 보고하였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허위보고'는 사고은폐, 책임회피, 업무 간소화, 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허위보고는 임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정직한 업무수행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사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하고 성실하게 수행된 업무 하나하나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발전 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갑문운영팀



사례2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나OO 차장은 갑문시설 유지보수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용역업체 직원 A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다음 달 진행할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A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아 기분이 좋은 나 차장은 A에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입찰 예정 가격 등을 알려주며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아 낙찰 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 재무현황 정보, 입찰관련 정보 등 공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하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공사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설사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었다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친분관계를 통한 정보공개 요청이 올 경우 사내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인천항만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공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갑문설비팀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품질도 좋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차장님..



사례1

부당한 알선·청탁

하OO 대리는 유지보수용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팀의 주XX 차장이 자기 친한 동생이 기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품질이 아주 좋다며 추천을 해주었다. 알아보니 하 대리가 알아본 업체에 비해 금액도 비싸고 품질도 비슷한 편이었다. 주 차장에게 말했더니 어차피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결국 하 대리는 주 차장이 추천한 업체에서 기자재를 구입했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행정처분·형벌부과, 인사, 수상·포상, 계약자 선정·탈락, 재화 및 용역 거래, 평가 관련 등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를 담당 직원에게 부당하게 소개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 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이다.
- 부당한 알선 또는 청탁을 받을 시, 공사의 계약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 공사의 윤리적 가치를 단호하게 전달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계약해야 한다.
- 부정청탁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부정청탁이 인정될 시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자 외에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평상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인친형만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갑문설비팀



사례1 허위보고

차OO 주임은 갑문설비의 유지점검 및 예방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몇 달 전 설비 점검 때 사소한 이상을 보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여름이 되어 장마철이니 이상 설비에 대해 정비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차 주임은 그 때 잠깐 작은 이상을 보였던 설비 하나 때문에 정비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과 예산이 아까울 거라는 생각에 이상 설비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고 예방정비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허위보고'는 사고은폐, 책임회피, 업무 간소화, 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허위보고는 임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정직한 업무수행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사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하고 성실하게 수행된 업무 하나하나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 규정

【IPA 임직원 윤리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